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2009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 개최



우리시회는 2009회계년도 제1차 간사회를 지난 3. 13(금) 오전에 이흥중 시회장과 감사, 간사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부의사항으로 상정된 ▶ 2008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건 ▶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정기총회에 부의키로 원안통과 하였다.

또한 ▶ 2009회계년도 포상계획(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우수건설업체 1개사와 모범사원 포상업체 5개사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포상을 정기총회시 실시키로 하되 향후 현재와 같이 계약신장울만 고려한 선정기준은 비합리적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새로운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우리시회는 4월 하순에 2차 간사회를 개최하여 5월 중순경에 개최예정인 제29회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 할 예정이다.

국회 재정위원-지역업계 대표 간담회 참석 건의



우리사회 이흥중회장은 지난 3. 25(수) 10시 성서공단내 한국염색 기술연구소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대구지역 출신인 박종근, 배영식 의원 등 9명,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및 김관용경상북도지사, 지역경제단체장 12명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흥중 회장은 이날 대구시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은 60%에 달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은 2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임을 지적하고 이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고속철도주변정비공사의 예와 같이 대구시로 위탁발주해 줄 것을 건의하고 아울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배점제도 도입 ▶턴키공사 설계평가지 지역업체 공동도급여부 평가제 도입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대책 ▶지방업체에 불리한 신용평가 차별해소 및 금융지원 확대등을 건의하였다.

2008년도 회원사 계약실적 현황

지난 2월 16일까지 실적신고를 접수한 결과 회원사의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은 지난해 지역주택부동산을 비롯한 민간건설경기가 극도로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신규 계약실적은 1조8,7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 정도 감소에 그쳤으며, 기성실적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3,436억 원 늘어난 2조4,560억원으로 집계되어 16%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액 및 기성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도	2007년도	증감액	증감율
계 약 액	1조8,722	1조9,510	감 788	감 4.03%
기 성 액	2조4,560	2조1,123	증 3,437	증 16.27%

이렇게 지역건설업체들이 예상외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은

- 지역건설업체들의 활발한 수주활동으로 대구이외 지역에서 7,000여억원 정도를 수주한 것과
- 민간부문에서 경기위축으로 30%가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07년도 5,400여억원에서 지난해는 62%가 증가한 8,800여억원을 수주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이며
- 또한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구시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역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현황을 보면

- 국가공기업등 기타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수주건수는 65%나 되지만 수주금액은 20%에 못 미쳐
- 앞으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등 국가공기업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대형공사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해당기관의 자제전환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 대구지역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지역발주(전체)		대구시 발주 (대구도시공사 포함)		기타공공발주 (국가, 국가공기업)		민간발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체	1,869	40,176	448	5,298	215	6,223	1,206	28,654
대구업체 수주액	1,089 (58%)	11,439 (28%)	389 (87%)	3,018 (57%)	136 (63%)	1,217 (20%)	564 (47%)	7,203 (25%)
타지역업체 수주액	780 (42%)	28,737 (72%)	59 (13%)	2,280 (43%)	79 (37%)	5,006 (80%)	642 (53%)	21,451 (75%)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세미나 참석



우리시회는 지난 3. 17(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 이 공동주최한 「4대강살리기 사업기대효과와 낙동강권역 사업추진 방향」세미나를 후원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사회 조종수 감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4대 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 ▶ 정부에서 지역업체 참여보장 목표치 60%이상으로 제시
- ▶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 ▶ PQ 심사기준에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여부를 심사요소로 하는 '배점제' 반드시 도입
- ▶ 가능한 한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분할 발주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정부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다.

-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3.5 시행)
 - 국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고시금액(76억원)**미만
 - 공기업 준정부기관 : (종전) 50억원미만 → (개정) **150억원**미만
 -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
-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개정(3.16 시행)
 - 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 ※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이며 2년경과 후 대상금액은 70억원**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신설

행정안전부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3. 2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정요건은 ▶노임단가의 등락율이 7% 이상 증감 ▶국토해양부가 발표(2월, 8월)한 실적공사비 등락율이 7% 이상 증감 ▶거래실례가 격이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율이 5% 이상 변동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체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 한 경우 등이다.

조달청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가점비율 확대

조달청은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건의를 일부 수용하여 공사현장 소재 업체가 참여한 공사의 경우 시공비율에 따른 가점비율을 상향 하는 등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개정('09.3.25)하여 3.26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가점비율 확대(제6조 제4항 제1호)

종 전	개 정
○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 발주기관 구분 없이
- 15% 이상 20% 미만 : 5% 가산	- 25% 이상 30% 미만 : 6% 가산
- 20% 이상 25% 미만 : 6% 가산	- 30% 이상 35% 미만 : 8% 가산
- 25% 이상 30% 미만 : 7% 가산	- 35% 이상 40% 미만 : 10% 가산
- 30% 이상 : 8% 가산	- 40% 이상 : 12% 가산
○ 지자체공사의 경우	
- 25% 이상 30% 미만 : 5% 가산	
- 30% 이상 35% 미만 : 6% 가산	
- 35% 이상 40% 미만 : 7% 가산	
- 40% 이상 : 8% 가산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 및 중견·중소건설업체의 PQ공사 참여기회 확대효과

■ 공동수급체 최소참여 지분율과 공사이행능력평가 시공비율 불일치 개선

- (현행) 공사구분 없이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제외
- (개정) 지자체공사 및 1,000억원이상 일괄·대안공사는 시공비율이 5% 미만인 구성원만 평가 제외토록 개선

사회보험요율 결정고시에 따른 협조요청

우리사회는 국토해양부 개정 고시('09. 2. 12)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관내 주요 발주기관 설계시 보험료를 건설공사 원가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

- 협조요청일 : 2009. 3. 6
 - 협조요청 발주기관 : 17개 기관
- (대구시, 본부, 구군청, 교육청, 도시공사)

대구의료원본관 리모델링 공사 공동도급 확대 건의

대구의료원에서 09.3.19 입찰공고한 공사에정금액 62여억 정도의 "대구의료원 본관 리모델링공사"에서 공동도급 구성원수를 대표자를 포함 2개사로 제한하면서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허용토록 정정공고함에 따라

우리사회는 보다 많은 지역업체 입찰 참여를 위하여 공동도급 구성원수를 ①대표사 포함하여 3인까지 확대하거나 ②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참여업체는 구성원수에서 제외하여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을 다시 허용내용으로 재차 정정공고하도록 3. 23 건의 및 방문·협조요청 하였다.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확대

정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08.10월부터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브릿지론 대상이 되는 발주기관을 확대함과 아울러 1사당 보증한도도 대폭 확대하였다.

■ 브릿지론 추진배경

-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대책 마련
- 건설업체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시까지 필요한 자금의 조기 조달을 지원하기 위함

■ 보증상품 구조

-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미래의 공사대금채권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아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구조
-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으로 보증부 대출금을 상환

■ 운용 현황

- 보증대상 발주처
- 공공 발주처

- 1) 정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4) 위 1)내지 3)이 출자, 출연이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민간 발주처

-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2) 외감법인 중 최근 결산일 현재 총자산 100억원 이상으로서 신보의 CCRS등급 KC1 또는 외사계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보증상대처 : 금융기관(농수협 포함)
- 1사당 보증한도
 - 공공 발주공사 : 2,000억원 이내(신용도 및 도급순위별 차등화)
 - 민간 발주공사 : 70억원 이내
 - ※ 공공부문 한도확대 : (시행) 70억원 → (11.11) 300억원 → (12.31) 2,000억원
- 운전자금 한도(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
 - 매출액 한도(약 1/4 이내) 및 자기자본한도(3배 이내)
 - 본건 공사의 90일 ~ 180일분의 소요자금
 - 발주처로부터 채권양도가 가능한 공사대금채권 금액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양도 책임

-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미확정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범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건물 외벽의 미세 균열과 하자

1. 문제점

최근에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하자소송을 많이 제기하였는데, 특히 아파트나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벽에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과연 이를 하자로 보아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 허용균열 폭에 대하여

콘크리트는 그 특성상 경화 전후의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균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건물 구조의 안정성,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균열을 허용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내, 건물 사무실 내부와 같은 건조 환경은 0.4mm, 실외나 지하와 같은 습한 환경은 0.3mm 정도를 그 허용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3. 판례의 태도

- 가. 그러나 법원에서는 위 0.3mm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하여도 하자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 반대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도 있습니다.
- 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2008. 8. 19. 천안시 백석동 어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0.3mm 이하의 미세균열은 재질특성상 허용되는 균열이라고 하지만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0.3mm 이하의 미세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 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일정한 균열이 불가피하고, 건설교통부가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습한 환경의 경우는 0.3mm로 허용균열 폭을 정해 둔 사실들에 비추어 0.3mm이하의 미세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라. 최근 대법원은 "허용 균열 폭 이내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그 균열은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결 어

통상 건축실무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0.3mm이하의 미세균열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왔으나, 최근의 하급심이나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미세균열이라도 극히 미관을 해치거나 균열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0.3mm이하의 미세균열이라도 법적으로는 하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 3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756,000	756,000	2월중에 제강사들이 4% 가격인상을 시도하였으나 수요 감소에 따른 제고증가 및 국내고철가 하락 등으로 실패하였으며 향후 가격은 약보합세 지속 전망되며 수급은 원활함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D13mm	746,000	746,000		
		D16mm	741,000	741,000		
	고장력 철근	D10mm	761,000	761,000		
		D13mm	751,000	751,000		
		D16mm	746,000	746,000		
후판	SM490B	1,145,000	1,050,000	가격이 8.3% 인하되었으며 추가로 20~30%인하 예상되며 수급 원활함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890,000	890,000	가격동향은 철근과 유사하며 수급사정도 양호함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890,000	890,000			
	400X400X13X21mm	950,000	95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300	빈크시멘트 가격 14%인상으로 포시멘트 가격인상도 확실함	0 단위: 포 0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9,700	49,700	시멘트 가격인상도 확실함	0 단위: m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벽돌	㉔190X90X57mm	45	45	시멘트가격 인상으로 가격인상소지이며 수급 원활함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수급에 현재 큰 어려움 없음	0 단위: m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9~12X4.5	1,020	1,020	수급 원활함	0 단위: 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X3~3.6	1,180	1,180		

회원 현황

회원수 : 166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9	61	13	3	166	△1
중구	9	2		1	12	
동구	11	8	1	1	21	
서구	4	4			8	
남구	10	5	1		16	
북구	11	13	2		26	
수성구	23	18	1		42	
달서구	8	9		1	18	
달성군	13	2	8		23	

※ 전입1, 전출2

전입회원

상호	업종 및 등번호	대표자	전입일자	전화번호
송산엘엔씨 (경북에서)	토건030026조경67	김진엽	2009.03.25	764-1828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09.03.01~03.31)	0	5	6	0	11
누계 (2009.01.01~03.31)	1	9	26	1	37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경전	변경후	전화번호
소재지	(주)대원시비이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108-3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94-6	751-2100
상호 소재지	일원종합건설(주)	일원종합건설(주) 대구 동구 효목동 83-1 일원빌딩6층	일원종합건설(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75-1	958-7050
상호 소재지	(주)금룡종합건설	(주)선대종합건설 대구 달서구 본동 867-2	(주)금룡종합건설 대구 달서구 본동 1149-1	572-5401
대표자	명진종합건설(주)	김익태	김익태, 김희진	637-6811
상호 대표자 소재지	동연건설(주)	동연건설(주) 이 용 훈 대구 동구 신천동 289-1 (2층)	우리토건(주) 정영현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114	767-4411
대표자	(주)성한종합건설	신영태	이순희	637-1156



◆ 경영상태 실적신고 및 기본회비 납부

- 신고기간 : 2009. 4. 1(수) ~ 4. 15(수)
- 신고장소 : 우리사회 사무처
- 제출내용 : 재무제표, 전산입력(서식), 하도급직불실적, 기본회비

◆ 2009년도 1분기 계약실적 조사

- 조사대상 기간 : 2009. 1. 1 ~ 3. 31 (1분기)
- 조사대상 : 1분기내 신규수주한 공사 및 자기공사
- 제출기한 : 2009. 4. 10(금) 까지



회장동정

❁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3. 3(화) 10:00 대구지방국세청 4층 회의실
- 하신일 : 관계자 격려 및 모범납세자 포상

❁ 2009회계년도 제차 간사회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9. 3. 13(금) 11:00 사랑채식당
- 회의내용 : 부의안건 처리 및 현안사항 협의

❁ 대구테크노폴리스 기공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3. 13(금) 15:00 달성군 유가면 현장
- 하신일 : 행사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4대강 관련 세미나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3. 17(화) 15:00 대구파이낸스센터 2층
- 하신일 : 내빈 접견 및 관계자 격려

❁ 경부고속철도 대구 구간 기공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3. 20(금) 15:00 서대구화물터미널 현장
- 하신일 : 행사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국회 재정위 기업지원대책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3. 25(수) 10:00 대구염색공단 염색기술연구소
- 하신일 : 공공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제도개선 건의

❁ 대구광역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3. 27(금) 11:00 호텔인터블고엑스코
- 하신일 : 2011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운동 방안 협의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십시오